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록

회의 개최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
일시 / 장소	2018. 12. 3(화) 16:00~18:30 / 세종시청 5층 505호 소회의실
참석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 이상인(위원장), 서성규, 신상두, 김지훈, 전응구, 변영호, 이영민, 이연숙, 이영선, 이희경
배석자	정책기획관 김덕중, 의회협력담당 오의택, 김미영 주무관, 김희진 주무관
상정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월정수당 최대·최소·기준금액 및 '20~'22년 인상여부· 공청회 개최방안(일시, 장소, 주민의견수렴 결과도출방안 등)· 설문안(행정안전부 표준 질문문항 기준)· 차기 심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의정비 잠정 결정금액(기준금액) : 5,328만원 - (월정수당) 3,528만원(월 294만원)· '19년 의정비 최대금액 5,681만원, 최소금액 4,200만원· 공청회 개최(1회) 일시 : 12.21(금) 14:00, 세종시청 4층 대강당· 설문안(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질문 → 적정하지 않다로 답할 경우, 낮다 또는 높다로 질문)· 차기 심의위원회(5차 회의) : 12. 24(월) 14:00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상인입니다.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저희 심의위원회는 1,2,3차 회의를 통해 주민수증감률 및 재정자립도등을 감안해서 타 광역시·도 수준이 되어야한다는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 하였습니다. 세종시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의원 1인당 인구수 및 인구수가 유사한 지자체의 소득수준, 의정활동, 재정자립도 등을 추가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3차 회의 때 세종시의회 의정비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고 오늘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기준금액과 최저·최고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영민 위원) 너무 큰 폭의 인상은 시민들에게도 너무 큰 인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무리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현실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큰 폭의 인상은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정부분 타당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영호 위원) 현실화 측면에서 보기 위해 타 광역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것 같습니다. 큰 폭으로 올리더라도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세종시는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회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심의회에서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광역시도에 견줄 수 있는 의정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경 위원) 저도 변영호 위원님 의견에 가깝습니다. 타 광역시도와 차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금액 결정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림잡아 결정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민 위원) 2020년부터 2022년 의정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면 점점 금액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인상 보다는 일정 금액까지 인상을 한 뒤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타 광역시·도 수준까지 인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숙 위원) 제 생각도 이영민 위원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저희가 낮은 폭으로 인상을 한다 해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꽤 큰 폭으로 느껴질 수 있어 반발이 클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인구수가 타 광역시도보다 아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6% 초과로 인상하되, 너무 큰 폭보다는 최소한으로 인상하고 그 다음 해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성규 위원) 세종시가 인구가 많진 않지만 인구라는 절대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도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1인당 주민수로 따지는 것이 더 적절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안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가중치를 적용해 본 안(案)들을 무기명 투표한 뒤 그 결과를 기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 값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금액을 50:50으로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상두 위원) 의원 입장에서도, 시민 입장에서도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지훈 위원) 저도 최저·최저 금액 기준에 대해선 윤곽이 잡히는데 구체적인 기준금액에 대한 생각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영선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의원 1인당 주민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만큼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의원 1인당 주민수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도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세종시는 추가적으로 만들어야하는 조례와 개정해야하는 조례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례수가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의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광역시·도 최저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응구 위원) 시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려면 시의원은 유능한 분들이 맡아야 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의정비가 가장 하위인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그에 마땅한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광역 시·도 대비 중간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계속 커 나가야 할 도시인데 훌륭한 의원들이 세종시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가 올라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차이가 크다면 금액을 제시 후 평균값을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개정 전 산식에 의한 금액이 합리적으로 여겨집니다. 이 방식으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 1인당 주민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전 산식에 의한 금액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 (변영호 위원) 세종시의 인구수증가, 의원 1인당 발의 조례 건수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의원 정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종시의원들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활동했습니다. 하나의 상임 위원회가 끝나면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관심 있는 시민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 부분을 참작해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의원 정수가 2018년에 18명이 되었으므로 의원 1인당 주민수 및 상임위원회 점유율의 수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1인당 주민수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상두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개정 전 산식처럼 기준금액 대비 최고 금액은 기준금액에 10~20%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을 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금액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민 위원) 위원님들께서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따르겠지만 저는 인상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심의회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산출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뜻이 모여진다면 수용 가능하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정 이전 산식에 따른 금액에 20% 인상된 금액에 찬성하신다면, 이것으로 정하고 의견합치가 안 되면 각자 금액을 적어내서 평균으로 구하는 방법 중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협력담당)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 산식에 따른 의정비 지급기준액 산출결과를 제공해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으로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려하면 금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 (이영선 위원) 지역 주민수 증가율 및 재정자립도 증가율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한 안의 금액 정도가 개정 이전 산식에 의한 금액과도 비슷하고 기준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민 위원) 저는 각 항목에 가중치를 균등 적용한 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성규 위원) 저희가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공청회시 제시될 최저 금액은 4,200만원 이하입니까?
- (위원장) 네, 맞습니다.
- (서성규 위원) 만약 공청회시 설문조사에서 4,200만원에 몰표가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민 위원) 각 항목에 가중치를 균등 적용한 안(案)과 지역 주민수 및 재정자립도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한 안(案)을 놓고 무기명 투표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준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안을 적어 내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기준금액 투표)

- (위원장) 무기명 투표결과, 10표 중 8대 2로 지역 주민수 및 재정 자립도 증가율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한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47% 증가한 3,528만원, 의정비 총액은 26.9% 증가한 5,328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비를 동결했던 지난 몇 년동안 미반영되었던 누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보면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 주민 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보더라도 이 금액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저금액 또한 월정수당 2,400만원, 의정비 총액 4,200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최고금액은 방금 결정한 기준금액의 월정수당 대비 10% 정도 상한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선 의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럼 최고 상한 금액은 월정수당에 10%를 더한 월정수당 3,881만원 의정비 총액은 5,681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 (다른 위원들) 없습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에 대해 결정하겠습니다.
- (김지훈 위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결일 것 같습니다. 만약 2~4년차에 동결한다면 물가 대비 삭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 (위원장)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다른 위원들) 네, 좋습니다.

□ (위원장) 결정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의 기준 금액은 월정수당 3,528만원, 의정비 총액 5,328만원으로 하고, 최저 금액은 월정수당 2,400만원, 의정비 총액 4,200만원이고, 최고 금액은 월정수당 3,881만원, 의정비 총액 5,681만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2020, 2021, 2022년의 월정수당은 해당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지훈 위원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 자리 이석 하셨으므로 지금부터는 인원 9명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의 위원회가 지난 3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2.6% 초과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난 3차회의에서 공청회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청회 개최횟수, 일시, 장소, 홍보방안, 주민의견수렴결과 도출방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합니다.
- 공청회 개최일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협력담당) 공청회 공고기간이 14일 이상이기 때문에 공고기간을 감안하여 일정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

- (위원장) 공청회는 한 번 개최하고, 2018년 12월 21일 14:00에 세종시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논의해야 합니까?

- (의회협력담당)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각 계에서 둠담고 계시기 때문에 각 계에 계신 많은 분들께 참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더 체계적인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던 것처럼 위원님들께서는 홍보 및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는 오늘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 (정책기획관) 발표자는 발표 신청 공고에 따라 발표 신청을 하거나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주민의견수렴 결과 도출 방안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으로는 공청회는 진행상 찬반이 격렬할 경우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있어 전문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일정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협력담당) 지난 회의 때 객관식으로 설문지가 제시 되었을 때 가장 낮은 금액으로만 선택이 몰릴 수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금액을 기입하는 안(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서성규 위원) ‘높다, 낮다’를 선택할 필요 없이 최저·최고 금액 사이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합산 후 평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이 많아질수록 시민들이 낸 결과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적정하게 결정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날 경우는 시민들의 평균 금액을 적절히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신상두 위원) 주관식은 오히려 시민들이 금액을 적어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광역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각자료가 설문지에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공청회시 자료는 책자로 만들어져 따로 제공이 됩니다. 설문조사는 토론 이후 공청회를 마무리 할 때에 작성하게 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설문지는 ‘낮다, 적정하다, 높다’ 질문에 답한 뒤 금액을 주관식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낮다와 높다’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제시된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 평균을 내는 안으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어떨까요?
- (서성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민의 의견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수정안으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문항에 먼저 답한 뒤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금액을 적는 방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 (의회협력담당)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결과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결과를 50:50으로 반영하는 것을 어려울 것 같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50:50의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 (위원장) 공청회 시 주민의견 수렴 방안에 어려움이 있어 나름대로 제안을 한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이영선 위원)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경우 공청회 이후 회의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정하여 인상폭을 조정하는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두 가지 정도 안으로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주관식으로 금액을 적어내 평균값을 낸 뒤 비교하는 방법과 금액을 적지 않고 '적정하다와 적정하지 않다'로 설문을 한 뒤 의견을 반영해 다음 회의에서 금액을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50:50 반영은 어렵다고 하니, 두 가지 방안 중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책기획관) 전화여론조사 시엔 여론 조사로 나온 금액을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공청회를 할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도출에 대한 관련법령이나 행안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이었는데, 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준비하겠습니다.
- (신상두 위원) 저희는 더 공정하게 반영하려고 50:50 반영의견을 낸 건데,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 (위원장) 공청회의 취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후 주민여론수렴 방안은 보완적인 방안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하다 또는 적정하지 않다로 먼저 물은 뒤,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낮다 또는 높다로 묻는 안으로 결정하고, 그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5차 회의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한 뒤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영선 위원)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들) 없습니다.
- (위원장) 그럼 공청회 주민의견수렴 결과도출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 정리한 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청회 개최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논의)

- (위원장) 공청회 이후 다음 5차 회의는 2018. 12. 24일 14:00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모두 고생하셨습니다.